



## ‘공유형 전동킥보드’ 관련 계정 갈취 및 무면허 운행 예방 안내문

-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(개인형 이동장치) 사용이 늘면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계정을 강제로 가입시켜 빼앗거나, 계정을 잠깐 빌려달라고 속인 후 받은 계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, 요금을 미납하여 계정 주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
- 위와 같은 행동은 강요죄 또는 공갈죄(금품갈취) 등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〈발생 과정〉

- ① 또래나 후배에게 SNS 또는 직접 만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계정(인증번호) 또는 카드번호 요구
  - ②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 사용 후 요금 미납 또는 타인의 카드번호를 전동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·이용
  - ③ 업체에서 계정 또는 등록된 카드 주인에게 요금 부과
- ※ 일부 업체의 경우 면허증 인증 절차 없이 연락처·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한 가입·사용 가능

- 또한,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시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
내용	처벌 규정
▶무면허 운전 (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)	범칙금 10만원
▶안전모 미착용	범칙금 2만원
▶승차정원(1명) 미준수	범칙금 4만원
▶인도 주행	범칙금 3만원
▶음주 운행	범칙금 10만원 (측정 불응 시 13만원)

- 청소년들 사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계정 갈취 및 불법 운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, 위와 같은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- ※ 학교폭력 신고 117,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권성욱, 경장 서희영(054-250-0804)